

폐기물 '인터넷 관리'

올해부터 서류로 관리했던 폐기물의 발생, 운반,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게 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올 1월부터 지정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과 종합병원, 위탁처리업체 등 전국 1,739개 폐기물배출 및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인계 관리시스템'(www.wms-net.or.kr)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장악취 이웃주민에 배상결정

주택가에 자리잡은 공장이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2월 2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정정자(57.여)씨 등 3가구14명이 염색공장의 악취와 소음으로 건강과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금강섬유를 상대로 8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385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조정위는 결정문에서 "금강섬유가 2000년 4월부터 주택가에서 염색공장을 가동하면서 5개월간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나 "회사측은 2000년 9월 악취측정시 악취도 3도로 배출허용기준인 2도를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게 되자 곧바로 방지시설을 보완한 만큼

악취방지 시설설치 이후의 배상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악취방지 시설을 제대로 설치, 가동하지 않는 전국의 수많은 주택가 공장들을 상대로 피해배상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한편 정씨 등이 이번 재정신청과 별도로 금강화섬 대상의 야간작업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데 대해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12월 7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공장가동 금지"를 결정했다.

지정폐기물 지도단속 지자체 이양

국가공단의 수질·대기 등 지도·단속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이어 이번에는 지정폐기물 지도단속 권한의 지자체 일원화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올 7월 1일부터 종래 국가공단에 대한 수질·대기 등 지도·단속 업무가 지방환경청에서 지자체로 위임키로 최근 결정한 바 있다. 이어 규제 개혁위원회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이 동시에 배출되는 경우, 현재 지방환경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는 관리체계를 지자체로 일원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정폐기물은 환경 및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가(지방환경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가공단의 지도단속업무도 지방이관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정폐기물 관리까지 지자체로 넘어갈 경우 환경관리의 큰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환경오염 지도·단속업무가 지자체로 넘어갈 경우 개발마인드에 따른 지도단속 소홀과 전문관리인력 부족에 의한 허술한 운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폐기물 전표제도 '소멸'

현재 시행중인 폐기물처리의 문제점을 보완한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이 개발돼 올해부터 3단계로 나눠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24일,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발생현황과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전표 제도」가 폐기물의 불법처리 및 방치 개연성이 상존하는 등 인계서 비교·검토에 많은 부작용이 잇따랐다고 밝혔다.

게다가 전표작성에 따른 사업자들의 과도한 행정력이 소모돼 왔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폐기물적법처리…」은 현행 전표 대신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전송하고,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시험운영중이다.

「폐기물적법처리…」은 발생·운송상태에서부터 처리상황의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고, 업종별, 지역별 폐기물의 체계적인 통계 실시간 산출이 가능하다. 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기초정보가 구조화, 편입화돼 있고 불법처리의 개연성을 추출하거나 분석까지도 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환경부는 「폐기물적법처리…」로 인해 사업자 1700개 업체를 기준으로 연간 업무량이 44 만7천397 시간으로, 기존에 비해 82%까지 대폭 줄어드는 데다 처리비용 또한 약 43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굴뚝통합 관제센터 가동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석현)은 전국 153개 대형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굴뚝통합 관제센터를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굴뚝통합 관제센터는 각 사업장의 굴뚝에 부착된 자동측정기가 먼지와 아황산가스, 염화수소 등 7개 대기오염 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해 결과를 분석,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환경관련 민원, 인터넷을 통해 접수·처리과정 공개

환경부는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낭비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부조리 예방과 행

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환경관련 민원서식을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과정도 공개하는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을 만들어서 2002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환경부가 지난 3개월 동안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금번에 완성한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은 2001년 1월부터 7개지방 환경관리청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전자민원시스템」을 대폭 개편하고 본부 민원을 추가한 것이다.

환경부, 악취방지법 제정

환경부는 과거 공단지역의 문제로만 인식되던 악취가 최근 들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악취방지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지난 1월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산업단지 중심의 단속으로는 국지적,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악취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와 선진국의 악취관리 실태 등을 검토한 뒤 상반기 중에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악취관리법은 ▲악취규제 지역의 지정 및 중점관리 ▲악취발생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기준 적용 ▲지역별 상시 측정망 설치 및 운영 ▲악취판정사 등 측정·관리 인력양성 ▲악취발생물질

소각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게 된다.

환경부는 제정되는 악취방지법을 통해 규제대상 악취물질의 종류를 현행 8개에서 22개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기오염 총량제 연내 도입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지역별로 규제하기 위한 대기오염 총량제가 연내 도입된다.

대기오염 총량제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3대강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사후대처 위주의 기존 대기질관리 정책이 사전예방 차원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 우리나라 대기질 정책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1월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대기오염이 특히 심각한 수도권에서 지역별 대기오염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정 '수도권 광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서울과 수원, 인천, 경기도의 15개 시·군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의 총량이 정해지며 각 지자체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규제대상이 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오존,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납 등이나 환경부는 이중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오존

등 3가지 물질을 우선 총량제로 묶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수도권의 각 지자체는 내년부터 공장입지의 제한이나 사업장의 저유황유 사용확대, 교통통제, 청정연료 보급과 청정자동차의 도입 등 대기질 개선책을 서둘러야 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굴삭기·발전기 등 기준 설정굴삭기(포크레인), 공기압축기 등 소음을 많이 발생하는 건설장비에 대한 소음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고소음 건설장비 소음규제 강화

환경부는 지난해말 발전기 등 11개 고소음 건설장비에 대한 소음표시제를 시행한데 이어 빠르면 내년부터 소음기준을 설정,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현재 이들 고소음 건설장비에 대한 소음관리는 권고기준(장비에 따라 73~88데시벨)만 설정돼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건설장비에 대해 소음권고치를 적용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올 상반기 중 용역조사를 실시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폐기물에 의한 독성간염 판명

노동부는 지난해 11월말 울산소재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주)원창 및 청우실업(주) 근로자 5명(사망 1명)에게 발병한 급성간염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 결과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유독물질에 의한 독성간염으로 최종 판명됐다고 지난 1월 11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 폐기물재처리업체에서 수은중독이나 치아산식증 등의 직업병이 발생한 적은 있으나 산업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독성간염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독성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과는 달리 화학물질에 의해 급격히 간기능 저하 현상이 나타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결과 이번 독성간염은 증발농축작업(액체상태의 폐기물에 생석회를 넣어 굳히는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간에 치명적인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이 공기중에 퍼지면서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에서도 디메틸포름아미드, 디메틸아세트아미드 등 독성간염을 일으키는 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전국 49개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폐기물의 유해성과 이에 필요한 보건상 조치의무를 사전 통보하는 한편, 추후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지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환경부, 토양오염물질 5개 추가지정

환경부는 지난 1월 9일 토양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공단에서 검출빈도가 높은 발암성 유기용매인 PCE와 TCE, 니켈, 아연, 불소 등 5개를 토양오염 물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토양의 오염 여부를 결정하는 물질이 구리와 비소 등 기존 11개에서 16개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또 지하에 매설된 대형 송유관 시설로 인한 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1천500km의 송유관 시설을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공장이나 산업지역, 폐금속광산, 폐기물 매립지역 등 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대상으로 토양 오염도를 매년 조사토록 함으로써 해당 부지의 신속한 복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특히 석유류 저장시설에 대한 토양오염 검사에서 총 석유계 탄화수소(TPH) 검사를 의무화해 경질유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유류에 대한 오염 여부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수질환경오염사범 2천196명 적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달 1일부터 6일까지 수질환경오염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2천196명을 적발, 15명을 구속하고 2천18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월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이용 396건(462명), 폐수·폐기물 등 유해물질 배출·투기 335건(423명), 배출시설·정화시설 비정상 가동 146건(206명), 기타 오염 물질 무단배출 및 직·간접 오염 957건(1천105명)이다.

환경개선자금 지원 확대

환경부는 산업체의 환경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개선자금을 앞으로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용자 한도액도 기업당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고 지원금리는 연 6.75%에서 5.91%로 낮추었다.

자금 지원대상시설도 확대해 중수도와 절수 설비, 매립가스 자원화 시설, 폐열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시설 등을 새로 포함시켰다.

용자를 받으려는 기업은 용자 신청서를 작성해 환경관리공단 본사나 자사에 신청하면 된다.

100명상 병원 폐수처리 의무화

올해부터 100명상 이상의 모든 병원들은 폐수배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

치해야 한다.

지난 12월 31일 환경부는 병원 폐수 배출 시설의 적용 범위를 종합병원에서 100명상 이상의 모든 일반 병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이 아니라도 병상을 100개 이상 보유한 전국 242개(11월말 현재) 일반 병원들은 올 6월까지 폐수배출 시설을 반드시 설치, 허가받은 뒤 오·폐수를 적정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과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확보해야 하는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폐수 배출량은 종합병원에 비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폐수배출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이외는 별도로 올해부터 유류가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라도 동식물 유지류(기준 30mg/l)와 광유류(“ 5mg/l)를 따로 측정해 각각의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

다.

병원 폐기물 처리가격 담합 무더기 제재

담합을 통해 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가격을 부당하게 높인 폐기물처리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는 지난 12월 23일 폐기물 처리가격의 인상·유지와 관련해 담합해온 한국클린시스템 등 14개 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의 부당공동행위를 적발해 행위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들 업체 중 한국클린시스템, 한국환경개발, 덕원산업, 중부그린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22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98년 규제완화로 감염성 폐기물처리비고시제가 폐지된 뒤 경쟁이 치열해지자 지난 2~4월간 감염성 폐기물처리 공제조합 이사회에서 처리비를 kg당 600원으로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중 9개 업체는 실제로 담합가격을 시행했다.

